

제4대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1. 신청 방법

가. 서면제출

나.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2020년 11월 29일 ~ 30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 신청서 접수기관 : 대한주짓수회 사무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74, 3층

- 전화 : 051-628-8567

2. 제출 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라.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별지 제3호 서식)

마. 대한주짓수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규정 :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기탁금) ② 기탁금의 납

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납입계좌 : 556637-01-005734

(국민은행 / 예금주: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 기탁금액 : 20,000,000 (일금 이천만원)

바. 퇴임 증명서(본 협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3. 행정사항

가.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4항,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0년 12월 8일에 실시하는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한주짓수회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3. 이력서 1부.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